

의안번호	2216307
의 퇴 인	문정복 의원
회 답 일	2026.03.30.
추계번호	26C04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항)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u>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의무규정
		(제2항)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 4.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건강·정서·심리·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 14.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개칭하려는 것임
-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어린이집 평가,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유치원 지원 및 교원 연수 등 유아교육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관명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함

[표 1]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개정안 제8조제2항 각 호 비교

현 행	개정안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1. 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2.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신 설>	3.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
	4.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건강·정서·심리·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 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주: 표 내 숫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개정안 제8조제2항의 각 호를 의미하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조문의 순서를 개정안 체계에 맞추어 일부 재배치함
 자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개편되어 업무가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타 기관이 동일 취지의 기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법적 성격, 교직원 신분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함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서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유치는 「교육기본법」 상 학교로서²⁾ 시·도교육청의 교육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교직원은 교원의 지위를 가짐
 - 이에 영유아 정책분석, 교직원 연수 및 권익 보호 등 주요 업무 추진 주체가 이원화된 상태임
 - 어린이집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 정책 조사·연구 및 분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연수 및 보육활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육 정책 연구 및 연수를 담당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리체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법적 성격	사회복지시설	학교
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교직원 신분	일반근로자	교원
주요 지원 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시·도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영유아보육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개정안 시행 시 한국보육진흥원의 개편 및 사업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타 기관의 기존 사업 조정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한국보육진흥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6.)에 따라 2026년 영유아 교사 대상 통합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말 기준 13,621명이 이수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